옥 천 군

선람	기관의 장

군 보

http://www.oc.go.kr

제1215호 2021. 5. 28.(금)

【훈 령】

○ 옥천군 훈령 제437호 옥천군 부동산권리 의무증서 보관 관리규정 폐지규정 1

【고 시】

○ 옥천군 고시 제2021-56호 삼남리 마을만들기사업 기본 및 시행계획 고시 2
○ 옥천군 고시 제2021-56호 장화리 마을만들기사업 기본 및 시행계획 고시 4

【공 고】

○ 옥천군 공고 제2021-627호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변경 지정 고시(안)에 대한 주민 의견수렴 공고 6
○ 옥천군 공고 제2021-651호 옥천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2

【기 타】

○ 옥천군의회 공고 제2021-32호 옥천군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안 예고 ..19

회람									

발행: 옥천군 편집: 기획감사실(☎730-3063)

옥천군 부동산권리 의무증서 보관 관리 규정 폐지규정을 이에 발령한다.

2021년 5월 28일

옥 천 군 수 인

옥천군훈령 제437호

옥천군 부동산권리 의무증서 보관 관리 규정 폐지규정

옥천군 부동산권리 의무증서 보관 관리 규정을 폐지한다.

부 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옥천군 고시 제2021-56호

삼남리 마을만들기사업 기본 및 시행계획 고시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8조, 「농어촌정비법」 제59조에 따라 금암1리 마을만들기사업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 5. 26.

옥 천 군 수

1. 사업의 명칭: 삼남리 마을만들기사업
2. 사업의 목적: 주민 문화복지 기반시설을 정비하여 주민 공동체 활성화와 삶의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며, 마을 존폐의 위기로부터 주민들의 협동과 노력으로 마을이 활성화 되는 대표적 농촌발전 모델로서 지우대마을의 지속적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3. 사업비: 300,000천원
   (지방비 300,000)
4. 주요사업내용
   가. 위치: 충청북도 옥천군 청성면 삼남리 일원
   나. 세부사업내용
   1) 기초생활기반: 마을문화복지사랑방조성, 주민활력마당조성
5. 사업시행자: 옥천군수 / 위탁시행자: 충북개발공사
6. 사업예정기간: 2020년 ~ 2021년(2년간)
7. 수용 또는 사용대상 토지사용 등의 명세서: 게재생략
8. 관계서류 및 편입토지 등의 명세서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옥천군청 농업기술센터 농촌활력과(043-730-3295), 충북개발공사(043-745-9202)에 비치된 시행계획서 열람 가능

【별첨】

삼남리 마을만들기사업 세부 투자계획

부문별	공 종		사업량	총사업비 (천원)	지방비 (천원)
합 계			1식	300,000	300,000
기초생활기반확충	마을문화복지사랑방 조성	■ 기존 농기계 창고를 문화복지사랑방으로 리모델링	1식	244,378	244,378
	주민활력마당조성	■ 운동시설 및 비가림 설치	1식	19,907	19,907
부대비용	기본계획 수립비	■ 제경비, 공사감리비 등	1식	35,715	35,715

옥천군 고시 제2021-57호

장화리 마을만들기사업 기본 및 시행계획 고시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8조, 「농어촌정비법」 제59조에 따라 장화리 마을만들기사업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 5. 26.

옥 천 군 수

1. 사업의 명칭: 장화리 마을만들기사업
2. 사업의 목적: 주민 문화복지 기반시설을 정비하여 주민 공동체 활성화와 삶의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며, 마을 존폐의 위기로부터 주민들의 협동과 노력으로 마을이 활성화 되는 대표적 농촌발전 모델로서 지우대마을의 지속적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3. 사업비: 300,000천원
   (지방비 300,000)
4. 주요사업내용
   가. 위치: 충청북도 옥천군 이원면 장화리 일원
   나. 세부사업내용
   1) 기초생활기반: 장화마을회관리모델링, 주민생활환경개선
5. 사업시행자: 옥천군수 / 위탁시행자: 충북개발공사
6. 사업예정기간: 2020년 ~ 2021년(2년간)
7. 수용 또는 사용대상 토지사용 등의 명세서: 게재생략
8. 관계서류 및 편입토지 등의 명세서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옥천군청 농업기술센터 농촌활력과(043-730-3295), 충북개발공사(043-745-9202)에 비치된 시행계획서 열람 가능

【별첨】

장화리 마을만들기사업 세부 투자계획

부문별	공 종		사업량	총사업비 (천원)	지방비 (천원)
합 계			1식	300,000	300,000
기초생활기반확충	장화마을회관 리모델링	▪ 장화마을회관 리모델링	1식	201,366	201,366
	주민생활환경개선	▪ CCTV 6개소 설치	1식	55,621	55,621
부대비용	기본계획 수립비	▪ 제경비, 공사감리비 등	1식	43,013	43,013

옥천군 공고 제2021-627호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변경 지정 고시(안)에 대한 주민의견수렴 공고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조 규정에 따른 급경사지 붕괴위험지구 변경 지정에 대하여 지역주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1. 5. 28.

옥 천 군 수

1. 목　적: 향수호수길 사면의 활동으로 인한 균열·침하 등이 발생하였고, 사면붕괴로 인한 인명 및 재산피해가 우려되어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으로 지정하였으며 사전 예방과 정비 및 체계적인 관리를 하고자 붕괴위험지역 면적을 변경하려함.

2. 공고기간: 2021 5. 28. ~ 2021. 6. 17.(21일간)

3. 공고방법: 옥천군청 관보, 홈페이지

4. 관련근거

○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6조(붕괴위험지역의 지정 등)

○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붕괴위험지역의 지정·고시 등)

○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4조(행정예고의 대상)

5. 의견제출 방법

○ 제출기한 : 2021. 6. 17. 12:00 까지

○ 제출방법 : 제출기간 내 서면 제출

- 우편 : 충청북도 옥천군 옥천읍 중앙로 99(옥천군청 문화관광과)
- 팩스 : 043-731-1986

○ 제출기한 내에 의견서가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6. 기타 자세한 내용은 옥천군 문화관광과(☎043-730-372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7. 급경사지 붕괴위험지구 지정 대상지

	지구명	위 치	변경 지정내용			변경 지정사유	관리 기관	비고
			유형	등급	현황			
당초	장계 지구	충청북도 옥천군 안내면 장계리 산90-1 일원	붕괴 위험	D	A=16,271㎡	붕괴위험지역 정비로 주민의 생명과 재산보호	옥천군청	
변경	장계 지구	충청북도 옥천군 안내면 장계리 산90-1 일원	붕괴 위험	D	A=24,525㎡	붕괴위험지역 면적 변경에 의한 변경 지정	옥천군청	

8. 지역지정 후 정비계획

○ 총사업량: 사면정비 A=24,525㎡

- 사면정비사업: 낙석방지망 A=24,325㎡

○ 총사업비 : 5,000백만원(국비 2,500 도비 750, 군비 1,750)

○ 사업기간 : 2021. 1 ~ 2022. 12

※ 사업기간은 예산(국·도비) 지원 계획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9. 붕괴위험지역에서 제한되는 행위 또는 금지사항(행위 협의)

가. 토석의 굴착을 수반하는 관로의 설치, 철탑의 설치, 도로·교량 등 구조물의 설치 행위

나. 토석의 굴착을 수반하는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증축·개축하는 행위

다. 옹벽·축대 및 측구 등을 변경하는 행위

라. 수목을 벌채하거나 잔디 등을 제거하는 행위

마. 그 밖에 급경사지의 안정을 저해하는 행위

※ 붕괴위험지역에서 상기 행위가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부득이한 경우 또는 안전조치를 원인으로 하는 행위허가 등 절차에 관하여는 사전에 우리군 안전건설과와 협의하여야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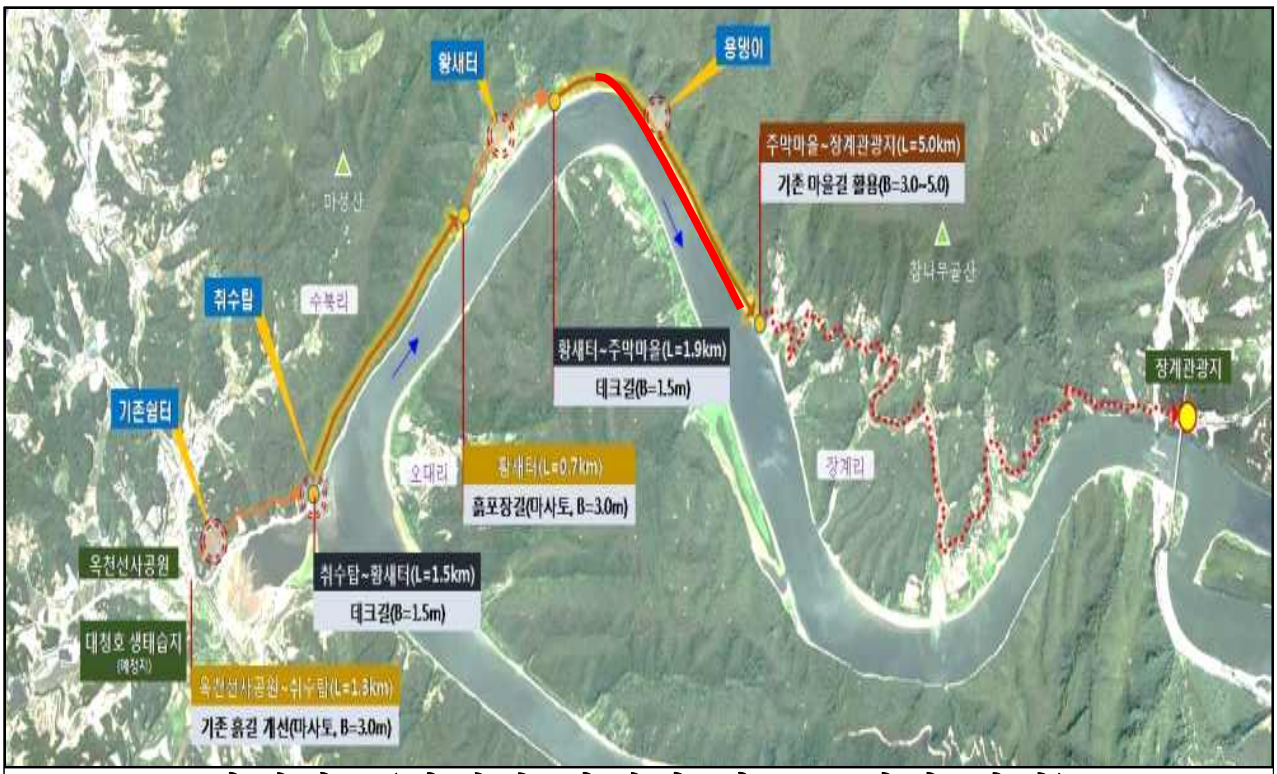
붙임 1. 위치도 및 사업계획도 1부

2. 현장사진 1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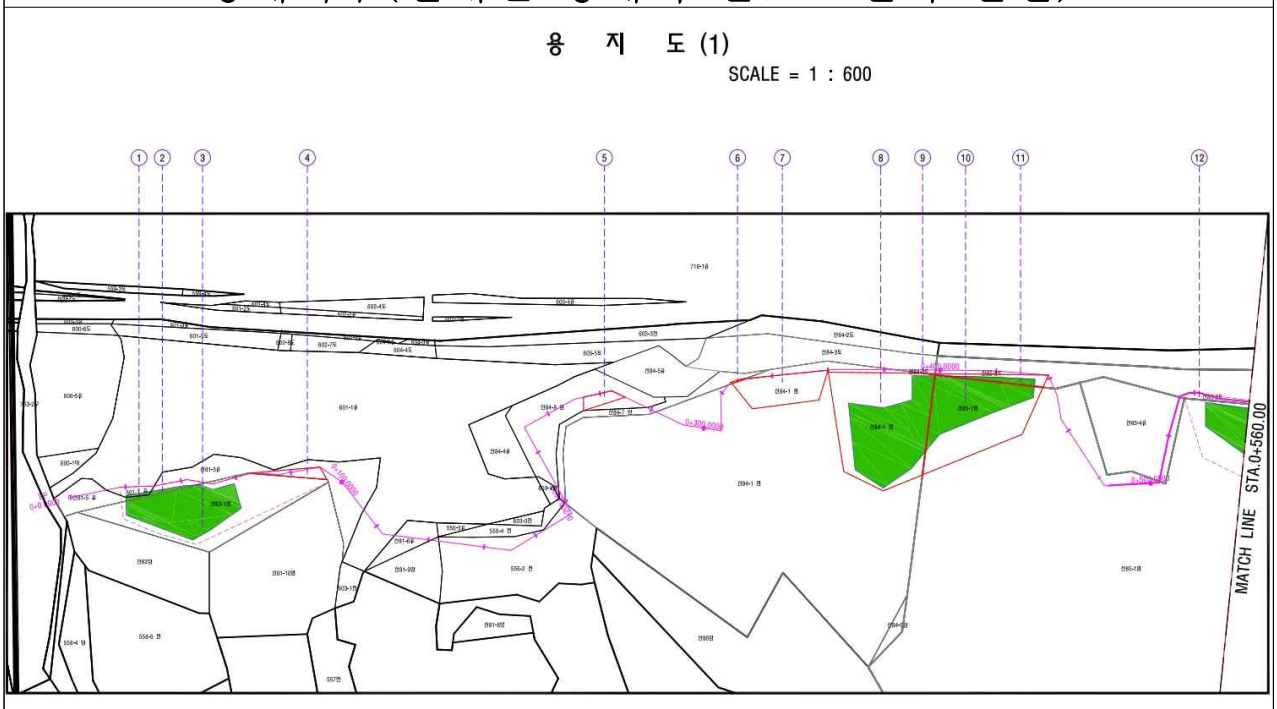
3. 주민 의견 제출양식 1부. 끝.

[붙임1]

□ 위치도 및 용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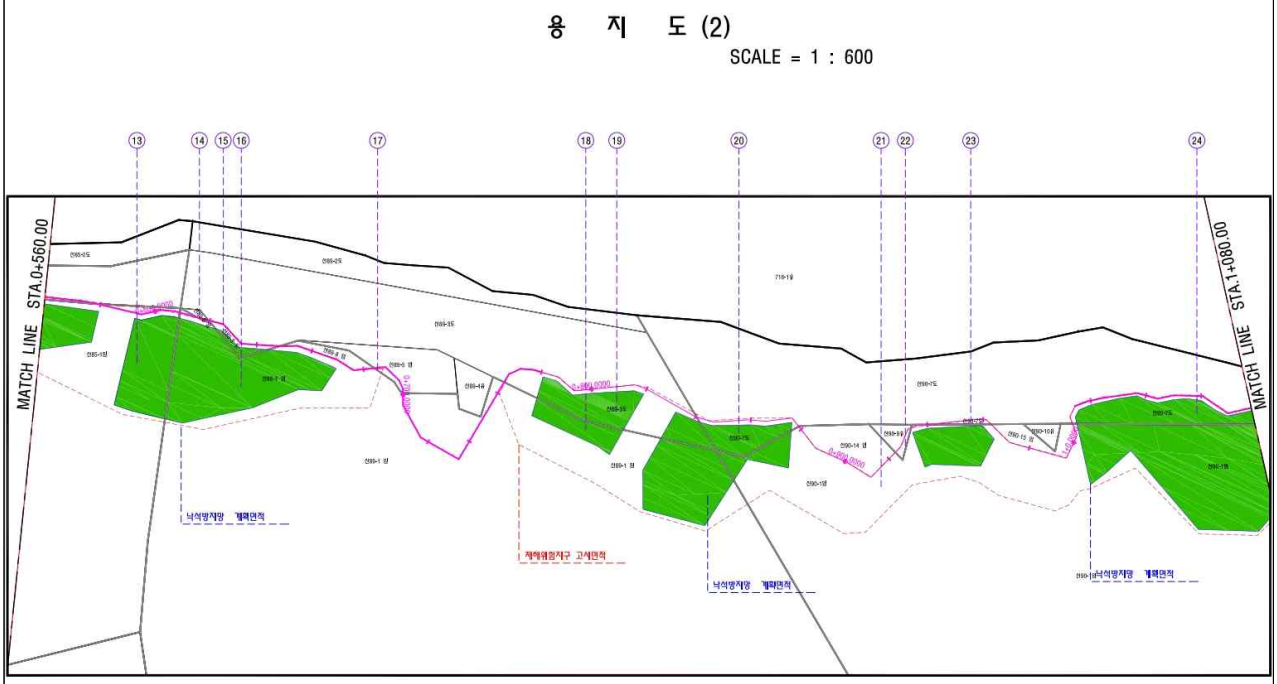


장계지구(안내면 장계리 산90-1번지 일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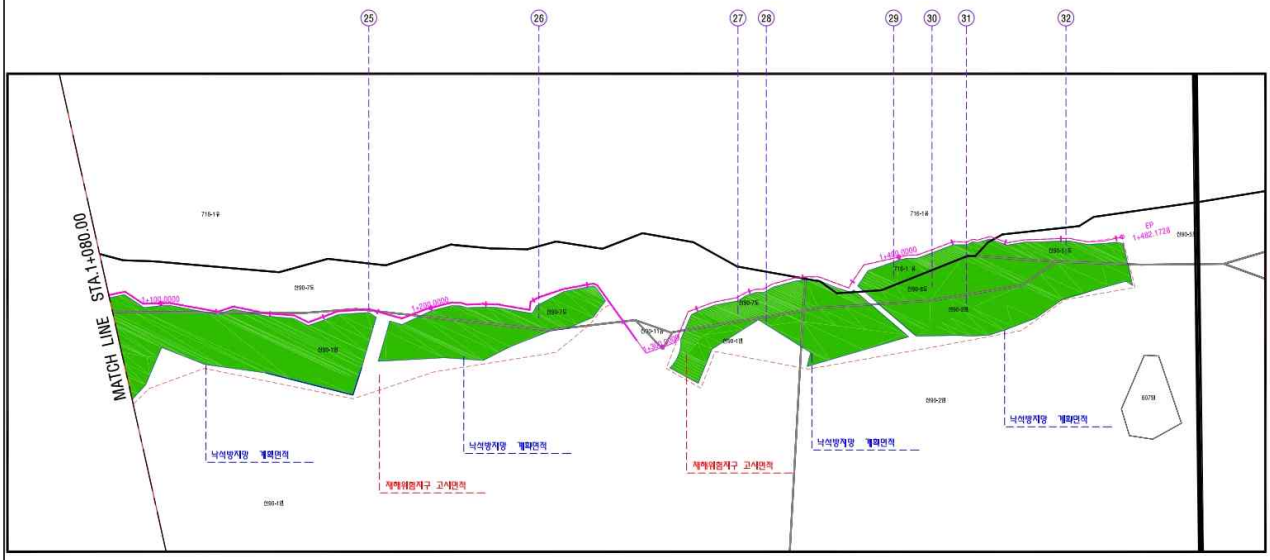


용지도(1)

□ 용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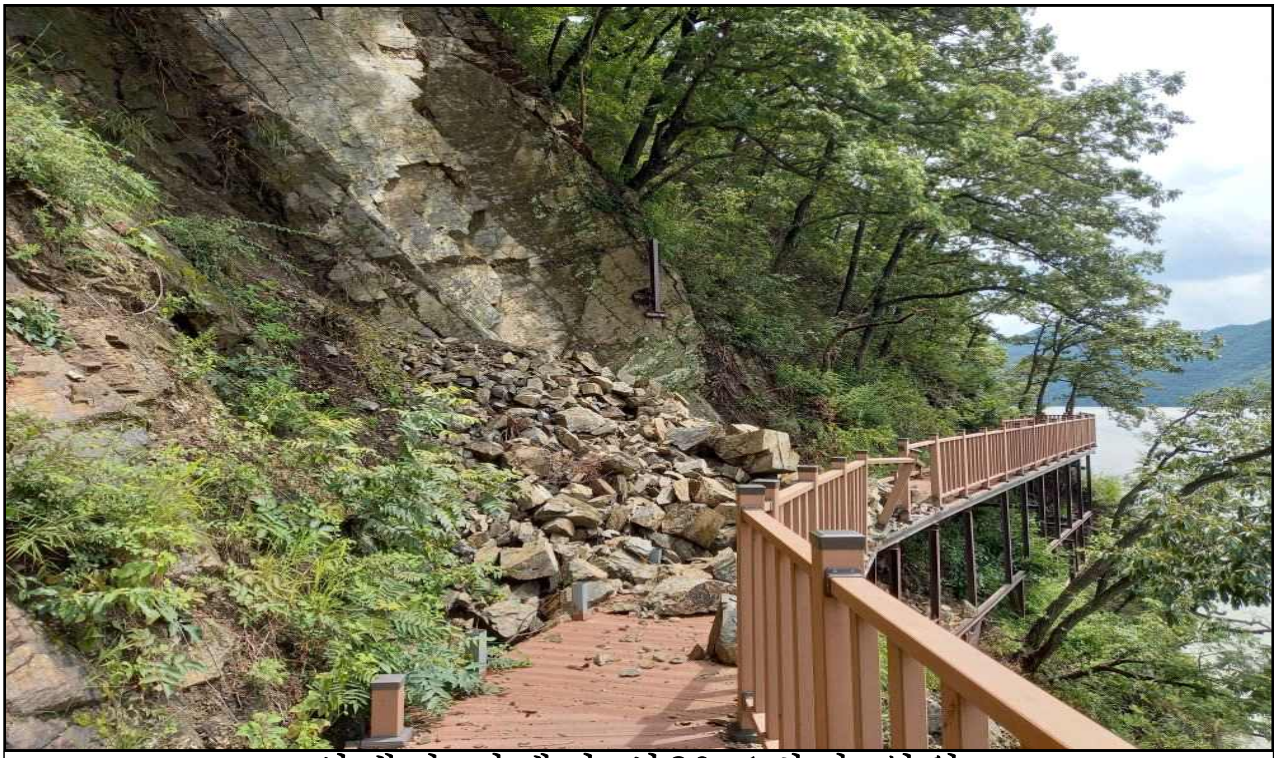
용지도(2)



용지도(3)

[붙임2]

□ 현장사진



안내면 장계리 산90-1번지 일원



안내면 장계리 산90-1번지 일원

[붙임3]

■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14.7.28>

의 견 제 출 서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인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의견제출 내용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장계지구) 지정·고시	
	당사자	성명(명칭)
		주소 (전화번호:)
	의 견	
	기 타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제31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0년 월 일

의견제출인 (서명 또는 인)

옥천군수 귀하

유 의 사 항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옥천군 공고 제2021-651호

옥천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옥천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옥천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1년 5월 28일

옥 천 군 수

1. 자치법규명 : 옥천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충북개발공사에서 시행중인 옥천 테크노밸리 조성공사의 준공을 위하여 경계지역 일부를 단일 행정구역(구일리)으로 조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조정(전)				조정(후)
법정리 (행정리)	지번	지목	면적(㎡)	법정리
가풍리	산3-12	임야	201	구일리

4. 의견제출

○ 「옥천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6월 17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옥천군수(참조: 자치행정과장)에게 전자우편, 서면 또는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전자우편(이메일) :lhj84132@korea.kr

전화 : 043)730-3164, FAX : (043)731-1987

가. 조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등

5. 붙임

○「옥천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 의견서 양식 1부.

옥천군조례 제 호

옥천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옥천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중 옥천읍 구일리, 가풍리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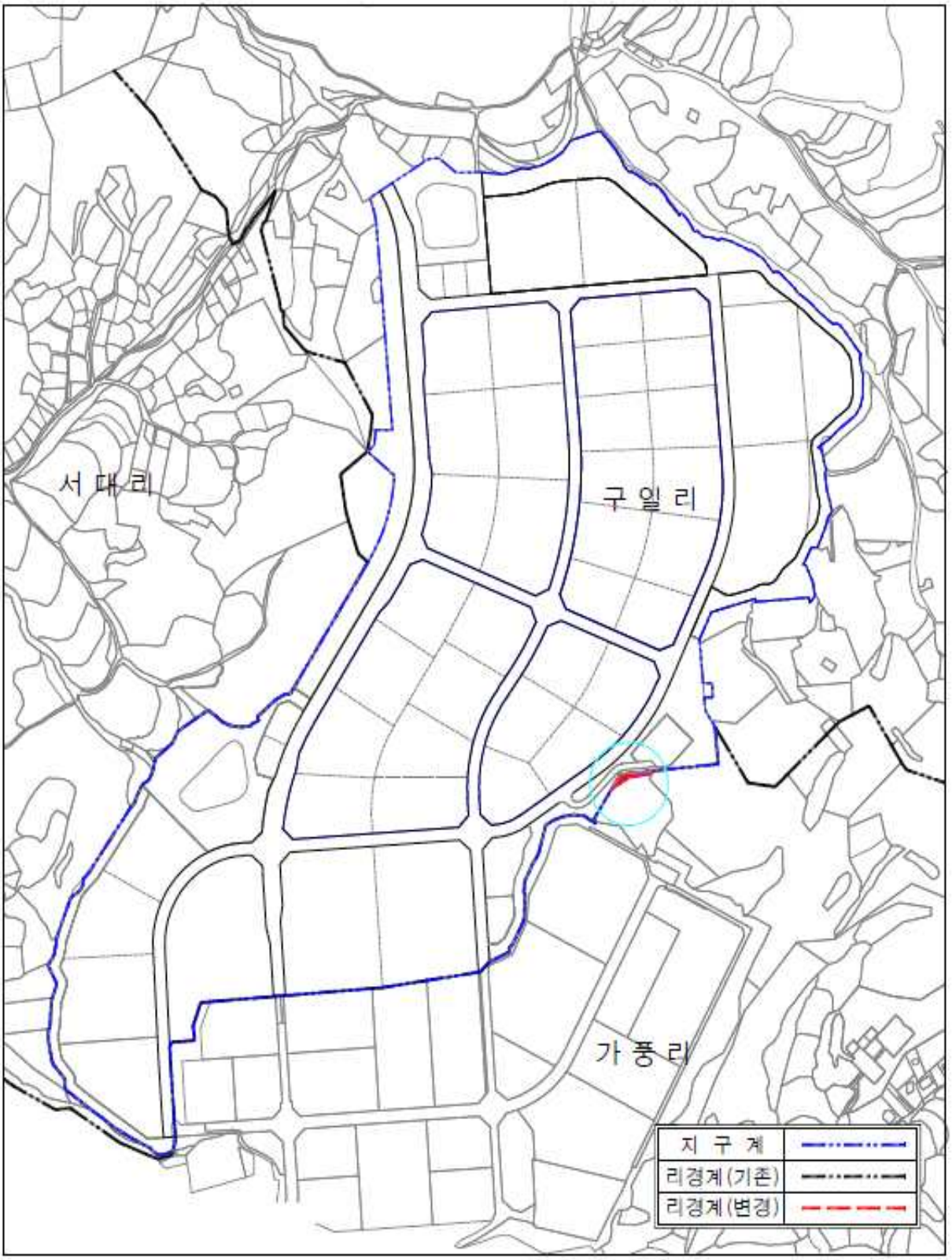
옥천읍	구일리	종래 구일리 일원(종래 가풍리 지번 중 16번지 전 641㎡, 17번지 전 347㎡, 18번지 전 2,142㎡, 67-1번지 전 853㎡, 69번지 전 24㎡, 69-1번지 전 883㎡, 72번지 과수원 133㎡, 72-1번지 답 67㎡, 1010-1번지 구거 24㎡, 1010-2번지 구거 155㎡, 1010-4번지 구거 191㎡, 1132-1번지 공원 22.1㎡, 1132-2번지 공원 30.4㎡, 1132-3번지 공원 6.1㎡, 1132-4번지 공원 6.5㎡, 1134번지 공원 2,492.10㎡, 1134-5번지 공원 27.4㎡, 1134-6번지 공원 14.9㎡, 1135-1번지 도로 20.5㎡, 산3-1번지 임야 3967㎡, 산3-10번지 임야 2,504㎡, 산3-11번지 임야 1,963㎡, 산4번지 임야 2,083㎡, 산5-1번지 임야 8,700㎡, 산5-2번지 임야 3,944㎡, 산6-1번지 임야 1,280㎡, 산6-2번지 임야 96㎡, 산6-3번지 임야 905㎡ 편입) (종래 서대리 지번 중 415번지 전 549㎡, 416번지 전 1,779㎡, 417번지 전 1,064㎡, 418번지 전 2,992㎡, 419번지 전 2,469㎡, 420번지 전 1,412㎡, 420-1번지 전 1,570㎡, 421번지 전 797㎡, 422-1번지 전 2,678㎡, 422-2번지 전 1,147㎡, 423-1번지 답 651㎡, 423-2번지 답 2,519㎡, 423-3번지 답 655㎡, 424-1번지 답 2,393㎡, 424-2번지 답 3,074㎡, 425-1번지 전 1,835㎡, 425-2번지 전 955㎡, 426번지 전 1,124㎡, 427번지 전 4,301㎡, 427-1번지 전 1,547㎡, 428번지 전 3,008㎡, 428-1번지 전 3,468㎡, 428-2번지 전 793㎡, 429-1번지 과수원 1,816㎡, 429-3번지 전 1,315㎡, 430번지 목장용지 1,114㎡, 431번지 목장용지 2,821㎡, 431-1번지 목장용지 1,545㎡, 431-2번지 전 115㎡, 431-3번지 전 154㎡, 432-4번지 전 452㎡, 433번지 유지 6,271㎡, 436-6번지 답 1,268㎡, 436-8번지

		답 410㎡, 458번지 전 1,273㎡, 459-1번지 전 1,640㎡, 459-2번지 전 1,898㎡, 460번지 과수원 3,365㎡, 461번지 전 1,051㎡, 462번지 전 1,573㎡, 462-2번지 전 200㎡, 462-3번지 전 1,573㎡, 463번지 주차장 670㎡, 463-1번지 대 456㎡, 463-2번지 주차장 376㎡, 463-7번지 전 946㎡, 463-8번지 전 510㎡, 474-1번지 구거 208㎡, 480-1번지 구거 97㎡, 산50-4번지 임야 2,975㎡, 산50-5번지 임야 3,967㎡, 산50-6번지 임야 5,591㎡, 산51번지 임야 9,124㎡, 산52-2번지 임야 1,587㎡, 산53-1번지 임야 11,603㎡, 산53-2번지 임야 4,066㎡, 산54-1번지 임야 21,018㎡ 편입) (종래 가풍리 지번 중 산3-12번지 임야 201㎡ 편입)
옥천읍	가풍리	종래 가풍리 일원(종래 가풍리 지번 중 714-1번지 구거 337㎡, 715-6번지 구거 4㎡, 715-7번지 답 522㎡, 723-4번지 구거 4㎡, 723-5번지 구거 234㎡, 724-3번지 답 229㎡, 724-4번지 도로 4㎡, 728-1번지 답 129㎡, 729-1번지 답 215㎡, 730-9번지 전 33㎡, 1044-1번지 구거 24㎡, 1045-6번지 하천 166㎡, 1045-7번지 하천 76㎡, 1045-8번지 하천 671㎡, 1045-9번지 하천 258㎡, 1045-11번지 하천 127㎡, 1045-24번지 하천 1,423㎡, 1046-1번지 도로 26㎡, 16번지 전 641㎡, 17번지 전 347㎡, 18번지 전 2,142㎡, 67-1번지 전 853㎡, 69번지 전 24㎡, 69-1번지 전 883㎡, 72번지 과수원 133㎡, 72-1번지 답 67㎡, 1010-1번지 구거 24㎡, 1010-2번지 구거 155㎡, 1010-4번지 구거 191㎡, 1132-1번지 공원 22.1㎡, 1132-2번지 공원 30.4㎡, 1132-3번지 공원 6.1㎡, 1132-4번지 공원 6.5㎡, 1134번지 공원 2,492.10㎡, 1134-5번지 공원 27.4㎡, 1134-6번지 공원 14.9㎡, 1135-1번지 도로 20.5㎡, 산3-1번지 임야 3967㎡, 산3-10번지 임야 2,504㎡, 산3-11번지 임야 1,963㎡, 산4번지 임야 2,083㎡, 산5-1번지 임야 8,700㎡, 산5-2번지 임야 3,944㎡, 산6-1번지 임야 1,280㎡, 산6-2번지 임야 96㎡, 산6-3번지 임야 905㎡ 를 삭제) (종래 가풍리 지번 중 산3-12번지 임야 201㎡ 삭제)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옥천 테크노밸리 행정구역 변경도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 례 명 : 옥천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 례 안	의　　견

옥천군의회 공고 제2021 - 32호

옥천군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안 예고

「옥천군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제66조의2(조례안예고)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5월 28일

옥 천 군 의 회 의 장

1. **조례명** : 옥천군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안
(대표 발의자 : 곽봉호 의원)

2. **발의의원 : 곽봉호 의원, 손석철 의원**

3. **제정이유**

○ 사회적 갈등발생이 예상되는 시설의 설치에 대하여 주민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알권리를 충족하고, 갈등 발생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하여 갈등유발 예상시설을 인·허가하는 경우 사전고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4. **주요골자**

○ 목적 및 정의(안 제1조~제2조)

○ 대상 시설의 범위(안 제3조)

○ 대상 지역의 범위(안 제4조)

○ 업무부서의 지정(안 제5조)

○ 사전고지의 내용 및 방법(안 제6조~제7조)

○ 의견제출(안 제8조)

5. 의견제출

이 자치법규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1년 6월 7일까지 옥천군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과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043-730-3942, FAX 733-9225)

※ 의견통지내용

가. 조례안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 · 단체일 경우 기관 ·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붙임 1. 옥천군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안 1부

2. 의견서 1부

옥천군조례 제 호

옥천군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적 갈등발생이 예상되는 시설의 설치에 대하여 주민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알권리를 충족하고, 갈등 발생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하여 갈등유발 예상시설을 인·허가하는 경우 사전고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민”이란 대상지역에 주소지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2. “행위자”란 사전고지 대상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를 말한다.
3. “사전고지”란 주민들의 건강이나 생활에 직접적인 피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시설에 대하여 옥천군에서 접수한 인·허가에 대하여 인근 주민들에게 알려주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대상 시설의 범위) 옥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에 대하여 행위자로부터 인·허가가 신청되었을 때에는 사전고지를 하여야 한다.

1.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 다만,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 내 입지하는 공장은「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7호의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나목부터 자목에 해당하는 시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중 가목부터 라목에 해당하는 시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5호의 발전시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6호의 묘지 관련 시설 중 가목, 나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시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8호의 장례시설

8. 그 밖에 관련 개별법령에 의거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시설과 유사한 용도로 분류되는 시설

제4조(대상지역의 범위) 이 조례에서 대상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1. 대상 시설의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에 공동주택(사업계획승인대상도 포함한다)이 있는 지역

2. 대상 시설의 경계로부터 1,000미터 이내에 10호 이상의 주택이 있는 지역 다만, 빈집은 제외한다.

제5조(업무부서의 지정) ① 군수는 사전고지 대상 시설별로 해당 업무를 담당할 부서(이하 “담당접수부서”라 한다)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사전고지 업무를 총괄할 주무부서(이하 “총괄부서”라 한

다)를 지정하여야 한다.

③ 담당접수부서의 장은 사전고지 대상 시설과 관련된 인·허가를 주민에게 사전고지 할 때에는 총괄부서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제6조(사전고지의 내용) 사전고지에는 해당 시설의 사용목적을 알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최초의 인·허가에서 해당 내용의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확인된 내용만 포함한다.

1.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전고지 대상 시설의 내용

가. 대지위치

나. 용도 및 구조

다.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라. 층수, 최고높이

2. 인·허가 접수일자

제7조(사전고지의 방법) 군수는 행위자로부터 사전고지 대상시설에 대한 인·허가의 신청 등을 접수한 경우,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로 다음 각 호의 방법을 통하여 대상지역 주민들에게 사전고지를 하여야 한다. 단, 변경 인·허가의 경우 5일 이내로 한다.

1. 군 홈페이지에 게재

2. 해당 읍·면장을 통한 이장에 대한 서면 통지

3. 해당 읍·면장을 통한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입주자 대표 또는 임차인 대표에 대한 서면 통지

제8조(의견제출) ① 주민은 의견제출 기한 내에 제3조의 대상시설 인·허가에 대해 군수에게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의견에 대한 검토 결과 및 해당 시설의 처리결과를 주민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조례안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옥천군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생년월일 :

○ 주　　소 :

○ 연 락 처 :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조례안 내용	의　　견	비고